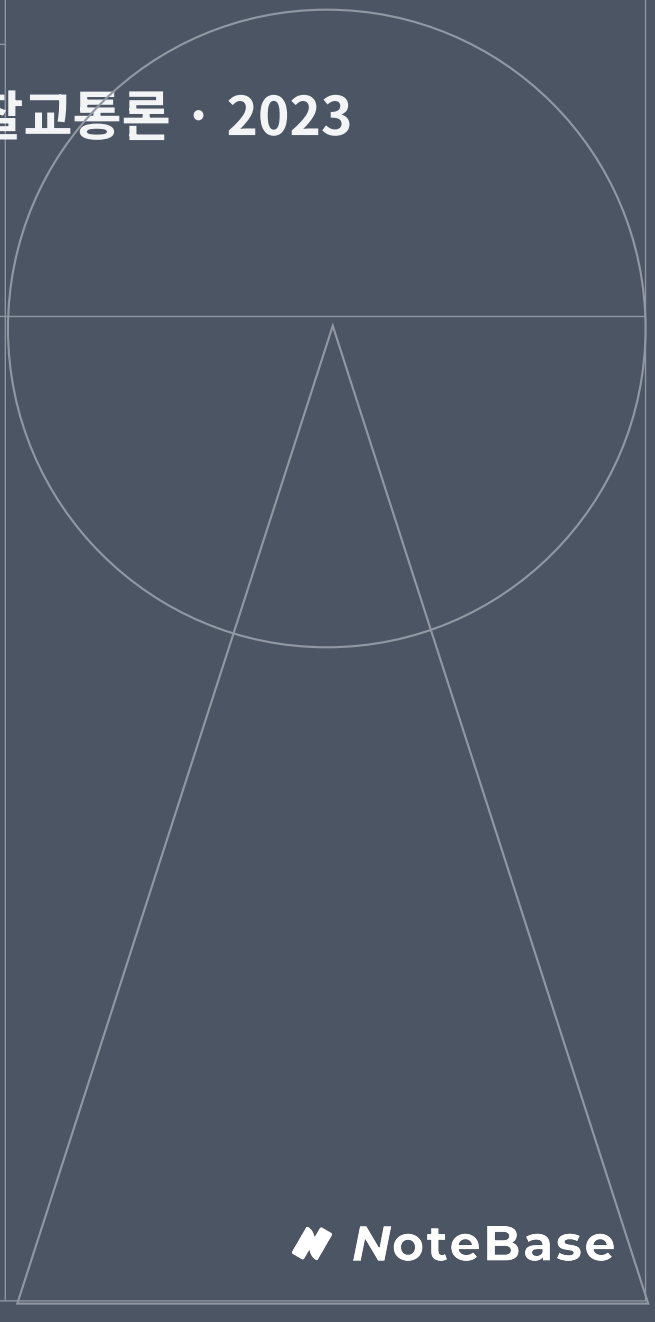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3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3

문 1.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거나 또는 조치하여야만 하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는 적절한 조치

②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조치

③ 운전석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

④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

정답 4번

①

경찰공무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을 발견하면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20.6.9>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NoteBase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도 금지된다. 경찰공무원은 그 운전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도로교통법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0.6.9>

③

창유리 투과율이 법정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NoteBase

④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등**이므로, 경찰공무원이 지정하는 업무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1.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NoteBase

문 2.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정답 4번

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가 신청장소**로 명시되어 있다. 경찰서에서 신청하려면 방문 전에 해당 관서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②

75세 이상인 운전면허 취득·갱신 대상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NoteBase

③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6. 8. 2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 공제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④

영문 운전면허증은 **이를 인정하는 국가·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 허용기간과 추가서류 요건도 해당 국가·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③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정답 4번

①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NoteBase

②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도로 바닥의 기호·문자·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③

접촉은 차가 추월·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되므로 법정 정의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NoteBase

문 4.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노면표시 중 중앙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표시한 황색실선만을 의미한다.

②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③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④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1번

①

중앙선에는 황색실선뿐 아니라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과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의 시설물**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②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는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tmXAAyCPV0TqXjTnIrHLd5LkAlniNwA/view?usp=drivesdk

③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bOMNoFycn_D-oVa-Dif4ui33GQ1bEXrv/view?usp=drivesdk

NoteBase

④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에서 자동차는 **점선 쪽에서는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어갔다가 돌아올 수 있고, 실선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

https://drive.google.com/file/d/1rsjQ7jwNKrh6DLb-dMj-hKOHj6xMWdrl/view?usp=drivesdk

NoteBase

문 5.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및 공사 방법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NoteBase

②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는 **점용 목적·장소·면적·기간과 공사 방법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④

교통상 위험이나 뚜렷한 방해의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를 몰라 조치를 명할 수 없으면, **경찰서장이 스스로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에 제거하도록 시키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NoteBase

문 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개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정답 1번

NoteBase

①

정차·주차 금지 위반 자체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②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에 포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에 포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④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처벌 특례가 배제되는 12개 항목에 포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문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② 차량신호등은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2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2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이하인 단일로에 설치한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정답 4번

①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알리는 것은 **규제표지**이다. 주의표지는 **도로 상태의 위험이나 도로·주변의 위험물을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차량신호등은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 이상(양방향 합계)**이고 **부도로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jJ0PpTfQ6O9hhyv5dAXbbvDFsfIBmQF/view?usp=drivesdk

NoteBase

③

단속 지점·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와 함께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장소를 평가할 때에는 사고 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 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나. 평가 방법에 따른 설치기준

비고
3.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위 표 1)부터 3)까지의 교통사고는 각각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사고, 위 표 2)의 기준에 따른 사고 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 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②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표지는 지시표지이다.
③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횡단보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정답 3번

①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Ⅰ. 일반기준
1.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
라.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I8XJQJ8ifqK5uXmJCcz6pxKufYbZGk93/view?usp=drivesdk

③

안전표지는 **교통상황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기본규격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축소는 규제표지와 지시표지에 허용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DowzJ3yH0BLKbTS-P4BIK3tJ_RxEMhN0/view?usp=drivesdk

NoteBase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횡단보도표지는 **지시표지**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oaMgKwCQzu9eescJz2zlpxJc50jP6_KE/view?usp=drivesdk

NoteBase

문 9.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통안전교육 및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대상으로, 5년에 1번씩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18.4.24, 2021.10.19>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NoteBase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받는 교육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구별된다.
정기교육은 **3년마다**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2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②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안전운전·친환경 경제운전과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④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 · 내용 ·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NoteBase

문 10. 「교통사고조사규칙」상 정의된 용어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① ㉠ 스키드마크 ㉡ 요마크 ㉢ 추돌 ㉣ 전복
② ㉠ 요마크 ㉡ 스키드마크 ㉢ 충돌 ㉣ 전복
③ ㉠ 스키드마크 ㉡ 요마크 ㉢ 충돌 ㉣ 전도
④ ㉠ 요마크 ㉡ 스키드마크 ㉢ 추돌 ㉣ 전도

정답 1번

㉠

스키드마크는 급제동으로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스키드마크(Skid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

요마크는 급핸들 등으로 **바퀴가 회전하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의 마모흔적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NoteBase

㉣

추돌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

전복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전복"이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짝지어진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대형면허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② 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제1종 보통면허 : 구난형 특수자동차

④ 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정답 3번

①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가 포함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u3eyaytDky9Nieq-p7SmMLYmBw-R2_A/view?usp=drivesdk

②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ARfE08dN9aLFpUbMUedAcTmlJ2Z4GAs/view?usp=drivesdk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가 필요하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HB39qoswxuycuDAgXd6Rf-NfiWpOk4G/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TFNOpcgzlm7NYuXdqBjx-5Bf1PDAFqkZ/view?usp=drivesdk

④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반차를 포함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G97_868B9--C3ooii4lrB1w9ZcSFjle/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표지 설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노면표시 설치 시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적색 46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위: $mcd/(m^2 \cdot lx)$]

정답 3번

①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20>

②

보호구역의 해당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2. 4. 20.> 보호구역 도로표지(제7조제2항제1호관련)
2. 만드는 방식
가. 지정한 보호구역의 종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 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 지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노면표시의 설치 시 최소재귀반사성능은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적색 46mcd/(m^2·lx) 이상**이다.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이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a0tS_l7JSu_63j6n3OMKaNryDHh1LiD/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정지선에서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우회전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의 운전자는 **그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므로 정지선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ㄷ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ㄹ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② 보험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것을 말하며,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측정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NoteBase

②

보험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교통사고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뿐 아니라 물건의 손괴도 포함**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15.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조사관의 조사 및 조치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때에 사망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과 사체를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기상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교통조사관은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차량의 손상 상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으면 **즉석에서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9조(목격자 확보 및 조사)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 · 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시와 사체 수속이 끝난 뒤 유족이 없거나 사체 인수를 거부하면 소지품과 사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 인계받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사상자 구호)
②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된 때에는 신속히 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 이 경우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인계

③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발생 연월일시와 기상상황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 · 방향 2.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바람 · 어둠 등 기상상황

NoteBase

④

사고현장 보존과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의 모양·최초 충돌지점·유류품 및 차량의 손상 상태는 반드시 사진촬영**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5조(사진촬영) ①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 차량의 손상 상태

NoteBase

문 16.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한 경우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공사구간 및 시행방법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유도 장비 중 갈매기표지판은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정답 2번

①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① 「도로교통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 ·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으면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특별시·광역시에서 도로공사로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면 관할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③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 · 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통통제용 갈매기표지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DAefqB72xJa_IHjlByP5y_a_Opcoc65/view?usp=drivesdk

NoteBase

문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주 또는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 약물 ㉡ 5년 ㉢ 5년
② ㉠ 과로 ㉡ 15년 ㉢ 3년
③ ㉠ 과로 ㉡ 5년 ㉢ 5년
④ ㉠ 약물 ㉡ 15년 ㉢ 3년

정답 4번

공통 해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NoteBase

문 18.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의 고유 업무로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특별시·광역시의 시·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 도로**에 대하여 교통 여건과 도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위를 정하여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④ 특별시 · 광역시의 시 · 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폐지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은 **심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의견만 유효**하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⑨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NoteBase

문 19.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시·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자를 도로별·구간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 · 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 불가능한 교통안전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받은 경찰서장이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정비**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 · 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 ·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일련번호는 **경찰서 단위로 부여**한다. 다만, **시·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시설은 시·도경찰청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관리요령)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 · 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NoteBase

④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
②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 · 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다리 위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도로관리청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 · 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NoteBase

ㄷ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ㄹ

다리 위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3. 다리 위

NoteBase